

# 2021년도 제1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2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8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77건(안전번호 제2021-87510호~8924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87510호는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87511호, 87512호는 복제 및 전송의 목적,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87513호~87515호는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하여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된 점, 동일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반복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87516호~8751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및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의 대상이 없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87520호~87551호는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제공에 이용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9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8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5쪽 사이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7쪽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9쪽 방송사명 및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11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12쪽 긴급 대응 저작물명과 저작물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번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8751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에 정식 발간되지 않은 출판저작물을 권한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고, 영리 목적을 가지고 불법복제물 번역 작업을 하는 것이 명백해 보임.
- B 위원: 게시물 본문을 보면 이전에도 여러 번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그림 부분을 포함한 출판저작물 한 권 전체의 내용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됨. 합법 시장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 C 위원: 같은 생각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임.
- D 위원: 영리성을 가진 행위임이 분명하고 저작물 전체 분량을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7510호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7511호, 8751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일부 분량을 우리말 더빙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7511호, 875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성우로서의 능력 함양 내지 마니아층의 취미 활동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광고 게시 등 영리성을 추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 B 위원: 게시물 내용은 물론 블로그 전체적인 성격을 살폈을 때 영리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공정이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부결 의견임.
- D 위원: 각 화의 일부 분량만을 편집하여 일명 '짜깁기'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형태를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만으로는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는 의견에 동의함. 역시 부결 의견임.

- A 위원: 개인이 각자의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더빙한 저작물이 전문적으로 제작된 합법 시장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7511호, 87512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7513호~87551호는 3명의 민원인이 각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인 바,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2021. 7. 22. 기준 사무처 확인 결과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전송 상태에 변경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음.

안전번호 제2021-87513호~87515호는 기준일 시점으로 블로그 자체가 폐쇄된 상태임.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됨.

안전번호 제2021-87516호~87519호는 기준일 시점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된 상태임.

안전번호 제2021-87520호~8755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되었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블로그로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 또는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불법복제물이 현존하는 상태임.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7513호~875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D 위원: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한 경우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 기존 심의 위원회에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였음. 해당 안건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임.
- B 위원: 이 경우 역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합법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동의함. 게시자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블로그 접근 제한이 된 경우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아 가결하여야 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7513호~8751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7516호~87519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87520호~8755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7552호~8924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Weekend’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7555호는 국내 음원 4GB 분량을 65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10년부터 발매된 가수 태연의 전곡을 제공하고 있음. 그 중 Weekend는 2021. 7. 6. 발매한 최신 곡임.  
(방송 ‘슈퍼밴드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8420호는 2021. 6. 28.부터 현재까지 JTBC에서 방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의 7. 5. 방영분을 128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캡틴 마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8545호는 2019. 3. 6. 개봉한 영화임. 인기 영화 시리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 복미 기준으로 2022. 11. 11.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시리즈 개봉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한편인 해당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87520호~8924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7520호~8924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7511호~8751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7510호, 제2021-87516호~8924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